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영역 보고서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결과 발표회

일시 : 2007년 1월 26일 (금) 오후 3시~5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

이 발표내용은 연구영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2006. 12.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 21
연구 책임자 조금주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
연구 원 최윤진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
권재원 (고덕중학교 교사)
연구 보조원 김윤나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보 고 서 차 례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제한점

II. 이론적 배경

1. 선행 연구
2. 학생 인권의 개념과 특성
3. 학교의 제도적 특성과 재학 관계의 성질, 그리고 학생의 법률적 지위
4.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학생 인권 내용
5. 인권 및 학생 인권의 유형과 유형별 주요 이슈

III.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인권 침해 내용 분석

1. 중·고등학생 인권 제한 및 침해 내용
2. 학교생활규칙 구조·내용 및 특징 파악
3. 2005년 이후 학교생활규칙 개정 내용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

IV. 중·고등학생 인권 실태 조사

1.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 조사
2. 학교 방문 면접 조사
3. 간담회

V. 외국의 중·고등학교 규칙 내용 분석

1. 미국, 캐나다, 호주 학교 규칙
2. 중국, 대만, 일본 학교 규칙

VI. 결론

1. 요약
2. 시사점
3. 중·고등학생 인권 관련 정책들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참 고 문 헌

부 록 : 학생용, 학부모용, 교사용 설문지

결과 발표회 진행 순서

- 15:00 사회 : 조대훈 (성신여대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
- 15:05 ~ 15:25 발제 : 조금주 (상명대 교육학과 겸임교수)
- 15:25 ~ 15:35 토론 1 : 고전 (대구교대 교수)
- 15:35 ~ 15:45 토론 2 : 김석언 (교육부 학교폭력대책팀 교육연구사)
- 15:45 ~ 15:55 토론 3 :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15:55 ~ 16:05 토론 4 :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 서리)
- 16:05 ~ 16:10 토론 5 :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회장)
- 16:10 ~ 16:25 토론 6 : 신유진 (서울고등학교학생회연합)
- 16:25 ~ 17:00 질의 응답

【 발제 】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연구책임자 : 조 금 주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권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재 학교생활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파악, 분석하고, 학생들의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학생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고, 침해사례와 인권실태를 조사·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학생 인권 개선책을 탐색하였다.

전통사회의 청소년은 미성숙자로서 온전한 사회구성원이 아니었다. 따라서 부모를 비롯한 어른의 지도와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몸에 익혀야 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지난 세기에 들어 과학과 발달심리학의 발달로 아동과 청소년 일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루소와 듀이의 자연주의적 아동관이 설득력을 얻게 됨에 따라 청소년은 성인을 표준으로 하여 미성숙자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와 의미를 갖는 온전한 인격체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의 인권논의는 바로 이러한 사상의 연장선 위에서 배태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인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두발 자율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가 두발의 길이와 스타일을 규제하자 학생들이 여기에 반발하고 나선 데서부터 시작한다. 1983년 두발 자율화 이후 여기에 대한 규제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다수의 학교가 두발 길이와 스타일에 대한 제한을 학칙으로 규정하자, 학생들은 이 규정에 반발하여 2000년 8월초 거리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서명운동에 나서는 한편, 청와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9월 학교생활규정 예시 안을 공고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 예시 안을 통하여 규제 완화를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두발 규제권이 이미 학교장으로 넘어간 상태였으므로 그 기대가 충족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6월 14일 발표한 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05년 5월 조사 결과, 전체 중학교의 92.6%, 그리고 고등학교의 91.10%가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32개의 중학교와 44개의 고등학교에서 기계나 가위로 학생의 두발을 강제로 자른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6월 27일 학생 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을 내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 자유를 학생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각 학교의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각급 학교가 두발 제한과 관련하여 제정 혹은 개정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칙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될 때는 감독기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것,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칙을 제·개정할 때는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발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국가 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2006년 7월, 두발 규제, 강제보충수업 등 학생인권 개선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서울 D고 3학년 O군에게 학교는 특별교육이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특별교육이수는 퇴학 처분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무거운 징계이다. 이에 대해 O군은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맞섰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 ‘학생의 날’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바뀐 2006년 11월 3일, 두발 제한과 체벌 등 학교 공간의 인권 침해를 그쳐달라는 각종 행사가 이어졌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두발단속’이 여전히 강행됐다. 수원시 O고에서는 이날 오전 대입수능시험을 코앞에 앞둔 3학년 전체 남학생을 대상으로 두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아직도 적지 않은 학교에서 강제 두발단속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인권 침해는 비단 두발, 복장, 용의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강제보충수업, 소지품 검사, 이를 지키지 않을 때의 체벌 등 그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8년 1월, 교육개혁위원회는 학생체벌 금지를 권고했으나, 교육부는 대체 지도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1998년 3월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전면 개정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체벌 금지 원칙을 마련하였다.

한편 1999년 2월 국회는 교사 체벌권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했다. 2000년 1월에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교사의 체벌 재량권 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2002년 6월, 교육부는 학교생활규정예시안을 통해 구체적인 체벌 규정을 마련하고 벌점제를 도입하였다. 같은 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예시안 개정을 권고했으나 11월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였다. 2003년 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아동 체벌을 전면 금지토록 권고하였다. 이어 2004년 6월 대법원은 학생 체벌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고, 2005년 9월, 교육부는 상습 폭력 교사 퇴출 등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했으며, 2006년 3월,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학생 체벌 금지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O고에서 지각한 학생에게 무려 200대를 때린 과도한 체벌이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2006년 8월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18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벌을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면서도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의 경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안에서 학교 규정에 명시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법원의 2004년 판례에 따라 ‘용인되지 않은 체벌’을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교사의 성격·감정에서 비롯되거나 공개적으로 체벌이나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협한 물건이나 교사의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 따라 건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대안 없는 체벌금지가 자칫 교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초·중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미적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4가지 학생 징계 규정에 ‘출석중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늘날 학생들의 인권 침해 사항은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와 체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인권 침해 현상은 학교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 배경, 성별, 성적, 외모에 따른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두발, 복장 규제 및 매체를 통한 표현 참여의 제한, 사상, 양심, 종교의 제한, 자치활동 및 외부 집회 참여 제한, 일기장,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침해로 인한 자유권의 침해가 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체벌로 인한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부당 대우 및 처벌로부터의 보호권,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빈곤층 및 소외 학생들의 복지권, 정당하게 일할 권리 등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권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재 학교생활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파악, 분석하고, 학생들의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목적을 둔다.

▣ 학생 인권 유형 분류

평등권	자유권					복지권					
						보호권		건강권		일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문의 자유	표현 및 참여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생활보장, 통신의 자유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	부당 대우 및 처벌	급식	시설	일할 권리	직업 선택

▣ 중·고등학교에서의 인권 침해 내용 분석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의 인권 침해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생활규칙의 구조 및 내용들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한 진정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학교생활규칙에 근거하여 규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두발에서, 복장, 양말, 신발까지 제한을 두고, 두발 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교생활규칙 자체가 인권 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점의 극복을 위해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와 관련한 학교생활규정예시안을 마련하였다. 이어 2003년부터 생활지도 방향을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중시」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통해 학교생활규칙을 개정·시행하도록 지도해왔다.

그러나 2005년 국정감사 이후 2006년 학교생활규칙을 개정했다고 보고한 학교 중에서 156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고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규칙을 제·개정을 했다고 보고했으나 용모복장이나 학생회, 징계 등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실제로 개정하지 않은 학교들이 많았으며, 두발 이외에 다른 용모복장 규제에 대한 개정 시도도 별로 없었다. 또 개선 시도는 했으나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하고 인권 침해 요소는 여전히 남겨놓아 개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학교도 90개 학교로 많았다.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례를 통해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2001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례와 2006년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의 두발 관련 대화, 2006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고발내용 등을 토대로 정리한 결과, 진정사례의 내용으로는 학생 자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2001년에 비해 2006년으로 올수록 진정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두발관련 고발내용은 총 495건, 용모관련 114건, 교복관련 81건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생들에 대한 자유권 침해가 비밀비재하며 이를 시정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설문 조사 결과

학생 인권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현 학생 인권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questionnaire)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표집 방법 및 대상

모집단을 구성하는 비율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대표성을 키울 수 있는 층화추출법(stratified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층화추출법은 단순 무작위 추출법에 비해 표집의 대표성을 큰 폭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층으로부터 일정 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표집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규모별, 설립별, 단계별, 공학별, 계열별을 고려하여 선정한 총 42개의 학교들은 다음 <표 1>과 같다.

이렇게 선정한 학교들을 시도별·지역별 규모로 보면 서울특별시 4개교, 부산 2개교, 대구 3개교, 인천 3개교, 광주 3개교, 대전 3개교, 울산 2개교, 경기 3개교, 강원 2개교, 충북 2개교, 충남 2개교, 전북 3개교, 전남 2개교, 경북 2개교, 경남 3개교, 제주 3개교이다.

<표 1> 설문 대상 학교

지역별	설립별	단계별	공학형태	계열	학교 수
서울(4개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6개교)	국· 공립	중학교	남중/여중 : 각 1개교	-	5개교
			공학 : 3개교	-	
	고등학교	남고/여고 : 각 1개교	인문계	5개교	
		공학 : 3개교	인문계 2개교 / 실업계 1개교		
	사립	중학교	남중/여중 : 각 1개교	-	5개교
			공학 : 3개교	-	
고등학교	남고/여고 : 각 1개교	인문계	5개교		
	공학 : 3개교	인문계 2개교 / 실업계 1개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개교)	국· 공립	중학교	남중/여중 : 각 1개교	-	6개교
			공학 : 4개교	-	
	고등학교	남고/여고 : 각 1개교	인문계	5개교	
		공학 : 3개교	인문계 2개교 / 실업계 1개교		
	사립	중학교	남중/여중 : 각 1개교	-	5개교
			공학 : 4개교	-	
고등학교	남고/여고 : 각 1개교	인문계	6개교		
	공학 : 4개교	인문계 3개교 / 실업계 1개교			

설문 대상 학교는 설립별, 단계별, 공학형태도 고루 표집되도록 고려한 것이다. 다음으로 실업계고등학교(농업고, 공업고, 정보산업고, 수·해양고, 실업고),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고), 특성화고등학교(조리, 원예, 미술, 디자인, 애니메이션, 인터넷 등)로 나누어지는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이에 따라 표집된 42개교 중에는 공업고 1개교, 정보고 2개교, 과학고 1개교, 디자인고 1개교, 대안중학교 1개교, 대안고등학교 1개교 등 7개교가 포함되었다.

집락추출법(cluster sampling)에 의한 1차 집락 단위는 학교, 2차 집락 단위는 학급으로 한다. 따라서 전국에 걸쳐 선정된 42개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 대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표 2> 설문 배포 대상

집단	대상	학교 수	대상자 수
학생	중학생 1, 2, 3학년별 무작위 10명=30명	20개교	1,260명
	고등학생 1, 2, 3학년별 무작위 10명=30명	22개교	
학부모	1, 2, 3학년 5명씩=15명	42개교	630명
교사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각 학년부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7명	42개교	294명
계			2,184명

10월 16일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예비검사를 거쳐, 10월 27일 대상 학교로 발송된 설문은 11월 15일까지 40개교에서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은 총 1,955부로 89.5%의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2) 설문 내용 구성

설문의 내용은 학교생활에서 경험한 인권 침해적 요소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규칙 인지도, 제정 절차, 바람직한 제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것, 학교 규칙 준수 정도 및 인권 침해 인식 정도에 관한 것, 처벌 여부, 처벌 종류, 지도 방법, 징계처리에 관한 것, 학교생활 인권 침해 여부, 인권 침해 대응 방안에 관한 것, 청소년권리 인식 정도에 관한 것, 인권 침해 방지 과제, 인권 교육 필요성에 관한 것, 건강권 침해에 관한 것, 일할 권리에 관한 영역의 문항들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 내용들을 설문 대상인 학생용, 학부모용, 교사용으로 제작했으며, 제작된 설문지는 전문가인 2명의 교수에 의해 검토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3) 설문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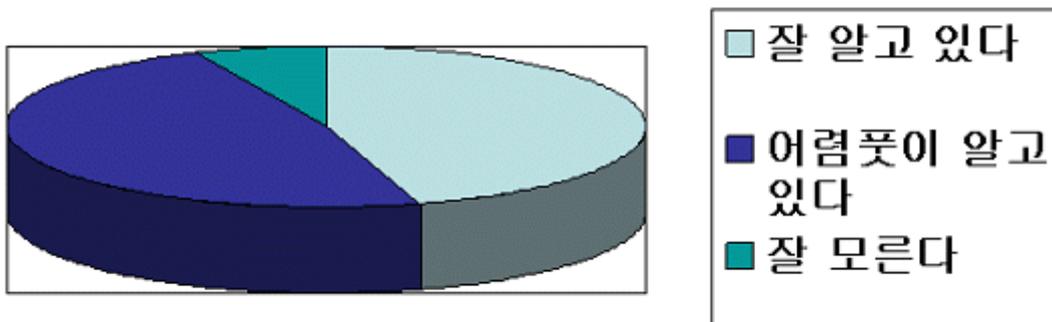
수집된 설문지는 코딩 작업을 거쳐 SPSS Window Version 13.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인권 상황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기초로, 지역별, 설립별, 단계별, 공학별, 계열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집단, 교사집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아울러 학교 생활규칙에 대한 지지정도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4) 설문 분석 결과

-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낮은 인지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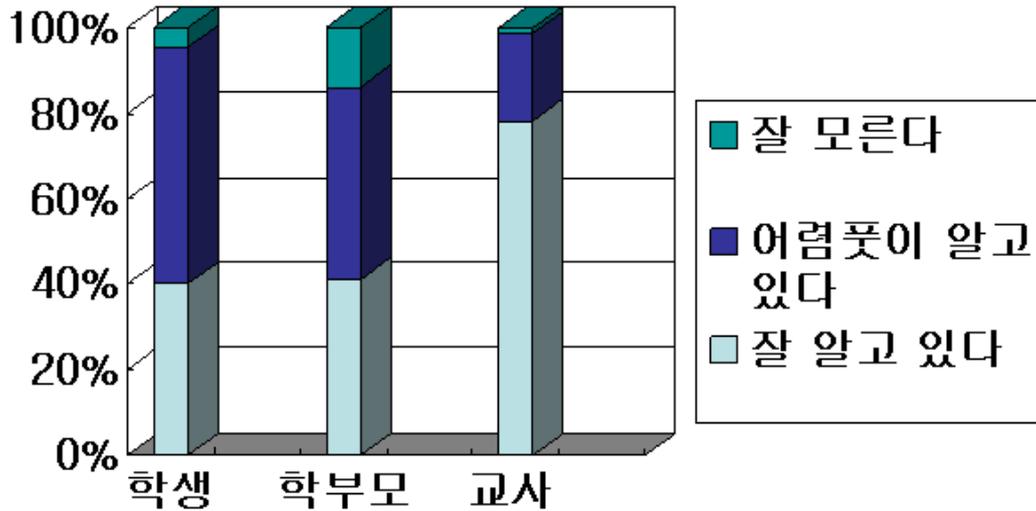
학교생활규칙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규칙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5.4%였으며, 전체 48.0%가 어렵פות이 알고 있다, 잘 모른다가 6.6%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학교생활규칙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규칙 인지도



다음은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집단간 인지도로 학생, 학부모, 교사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교사들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8.3%로 가장 높게 반응한 한편 학생들의 55.5%, 학부모들의 45.1%가 어렵פות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인지도는 교사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부모들의 13.8%는 학교생활규칙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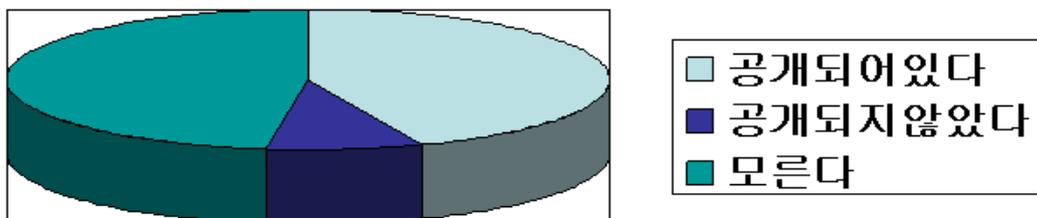
집단별 학교생활규칙 인지도



국·공립학교 보다 사립학교의 규칙이 더 많이 인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안학교의 규칙이 가장 많이 인지되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가 가장 적게 인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생활규칙을 공개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다가 43.9%, 공개되지 않는다가 8.3%였으며, 공개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47.8%로 절반에 달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학교생활규칙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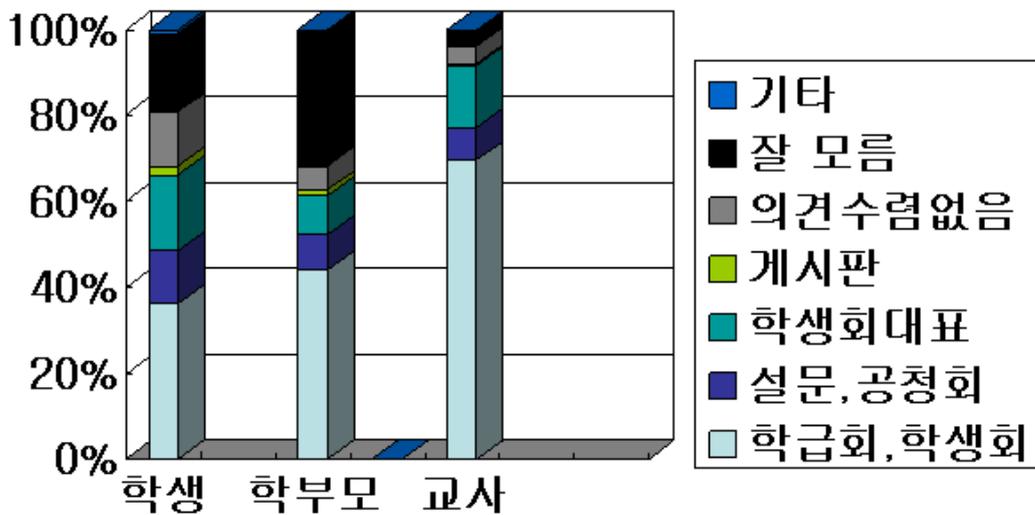
학교생활규칙 학교홈페이지 공개 여부



- 학교생활규칙의 비민주적 재·개정 절차와 개정 규칙에 대한 낮은 만족도 -

교사들의 67.6%가 학급회, 학생회와 협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들은 35.6%만 학급회, 학생회와 협의한다고 응답했다. 또 의견수렴 방법을 잘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이 17.9%, 학부모가 29.6%에 달해 교육주체들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의사소통 방법도 잘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한 의견개진은 매우 저조하여 거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학교 게시판이 실명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의견개진을 꺼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교생활규칙 재.개정시 의견수렴 방법



다음 <표 3>에서와 같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과반수가 언제 학교생활규칙이 개정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41.2%가 2004년~2005년 사이에 학교 규칙이 개정되었다고 정확하게 응답했으며 잘 모른다는 응답은 16.4%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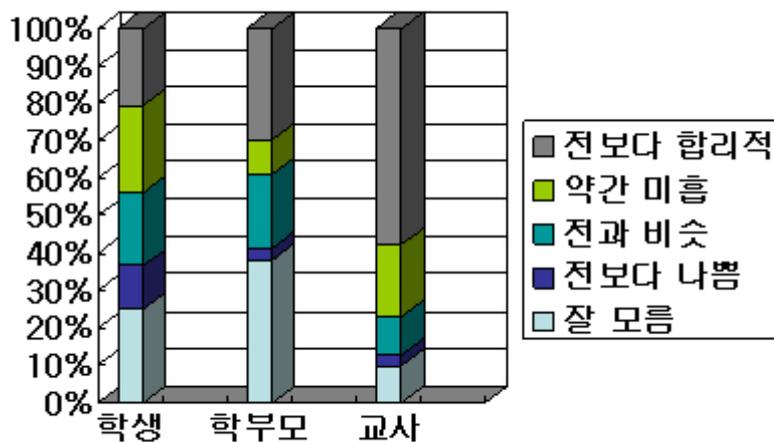
<표 3> 학교생활규칙 개정 시기 집단별 비교

	학생		학부모		교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2000년 이전	21	1.8	14	2.6	13	5.0
2001~2003년	50	4.3	22	4.1	31	11.8
2004~2005년	235	20.3	71	13.3	108	41.2
2006년	152	13.1	50	9.4	49	18.7
잘 모름	626	54.0	314	58.9	43	16.4
합계	1,084	93.4	471	88.4	244	93.1

Chi-Square: 149.740(p=.000)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6월 27일 학생 두발 제한 관련 제도 개선 권고 결정을 내린 시기를 즈음하여 학교생활규칙을 개정한 학교들이 많았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바뀐 교칙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생의 20.5%, 학부모의 29.7%만이 이전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교사들은 무려 60.3%가 이전보다 합리적이라고 대답해서 상당한 반응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교사들은 2004년~2005년 사이에 집중적인 개정으로 학교 규칙과 관련한 문제는 사라졌다고 믿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학교생활규칙 개정 집단별 만족도



- 복장, 두발, 학생회 입후보자 성적제한 규정 등을 인권 침해로 인식하는 학생들 -

현재 학교생활규칙들에 대한 준수 정도를 응답하게 한 결과, 모든 영역을 막론하고 대부분 학생들은 절대 다수가 해당 규칙이 있으나 마나 하다고 응답하였거나 아니면 그런 교칙이 있는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엄격히 지켜지거나 비교적 잘 지켜진다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규칙은 교복 변형, 무스·스프레이, 염색·파마, 매니큐어, 화장과 같이 용의복장 규정 중에 비교적 눈에 잘 띄는 것들이었다. 반면 교복 착용, 두발 길이, 두발 모양 같은 경우는 의외로 상당수가 있으나 마나 하다고 응답하였다.

두발 길이에 대한 학교생활규칙이 엄격하게 지켜진다는 학생이 16.0%, 제대로 지켜진다고 응답한 학생이 18.5%, 있으나마나 하다가 48.8%로 응답했으며, 두발의 형태와 관련 이 규칙이 엄격하게 지켜진다는 학생이 27.8%, 제대로 지켜진다가 34.2%, 있으나마나 하다가 26.3%의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장, 두발, 용모, 이성, 집회와 결사,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학교생활규칙에 대해 청소년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학생들은 복장관련 규칙들, 두발관련 규칙들, 그리고 학생회 입후보자 성적제한 규정 등을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두발, 복장과 관련한 불만이 높음을 인지할 수 있다.

분산분석(ANOVA)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 세 집단 간의 학교생활규칙 인권침해 인식 정도의 차이는 전체 평균 및 각 규칙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4에 가까울수록 해당 규칙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며, 1에 가까울수록 인권침해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학교생활규칙과 관련해 두발 길이에 대해 3.14, 두발 형태에 관련해 3.17의 평균치를 보인 한편, 복장, 두발, 용모, 이성, 집회와 결사,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영역에서는 2점대의 점수 분포를 보여, 다른 영역과 비교해 두발 부분이 가장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간 차이는 주로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은 학교생활규칙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여기는 정도가 높은 반면, 교사들은 그렇게 여기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재를 가하는 측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받는 측은 인권침해라고 여기는 것이다. 모든 규칙에 걸쳐 일관되게 교사들은 해당 규칙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세 집단 중 가장 낮았으며 학부모는 그 중간에 위치했다. 교사들의 교칙 인권침해 인식 정도를 교사 내부 집단별로 좀 더 상세히 분석해 본 결과 경력 20년~30년 사이의 교사들이 학교규칙의 인권침해인식이 낮았으며 경력 10~20년의 교사들이 가장 높았다. 교원 단체별로 보면 한국교총 소속 교사들이 가장 낮았으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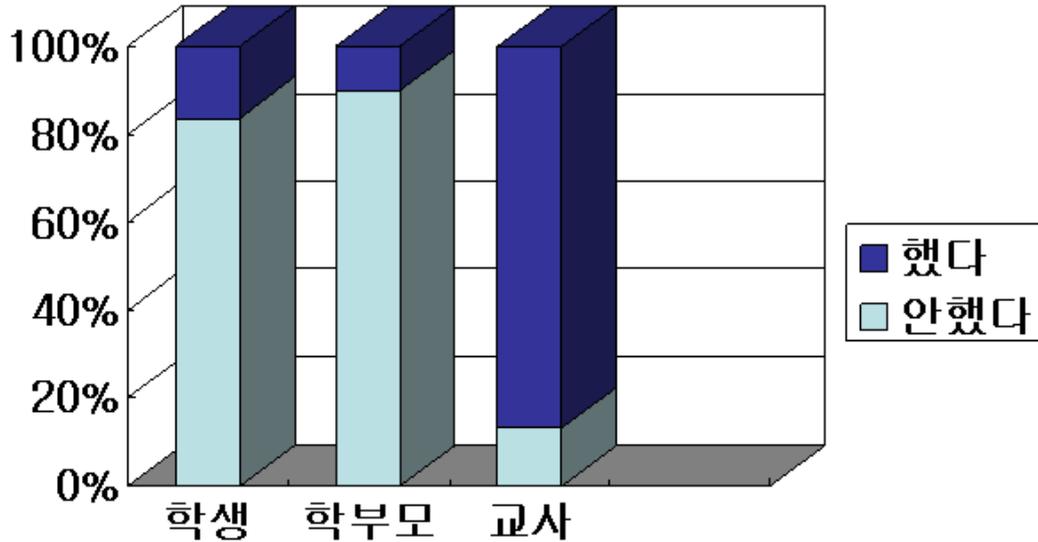
평등권, 자유권, 보호권에 관한 기본권적 인권 상황에 관한 문항에서도 교사가 스스로 인권을 침해했다고 여기는 정도에 비해 학생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여기는 정도가 월등히 높았다.

- 왜 처벌받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벌을 받는 학생들 -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또 교사들이 가장 많이 가하는 처벌은 훈계, 혹은 잔소리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훈계 또는 잔소리를 했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에 비해 받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훨씬 적어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교사의 처벌을 처벌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의 학생들이 몽둥이나 회초리, 혹은 손발로 때리는 체벌을 받았다. 이는 전체의 40% 가량이 체벌을 경험했던 2000년의 연구(전교조·한길리서치)와 비교하면 확실히 크게 개선된 것이다. 또 2000년대 들어 도입된 벌점제도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처벌이 가볍고 사소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절차와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없이 가해진다면 그 역시 분명한 인권 침해이므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도 교사와 학생의 심각한 인식차이가 드러났다. 교사의 86.7%는 처벌을 하기 전에 충분히 통보 했다고 응답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는 이와 거의 대칭되는 반응을 보여 각 83.7%, 90.0%가 충분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즉 학생들은 왜 처벌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처벌 받은 것이다.

징계 통보



- 위협받는 건강권 -

급식, 시설 관련 건강권적 인권 상황을 살펴보자.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급식과 관련한 사항들부터 살펴보자. 먼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식사 시간제한의 문제를 살펴보자. 학생의 48%, 교사의 47.6%가 점심시간 내내 식사시간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만 36.1%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모른다는 응답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급, 학년별로 제한한다는 응답도 이와 비슷하여, 절반 정도의 청소년이 점심시간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급식 장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 장소가 교실인 경우는 급식시간 제한이 15%에 불과하였지만 급식 장소가 식당인 경우는 54.3%가 시간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분한 식사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당공간의 확보가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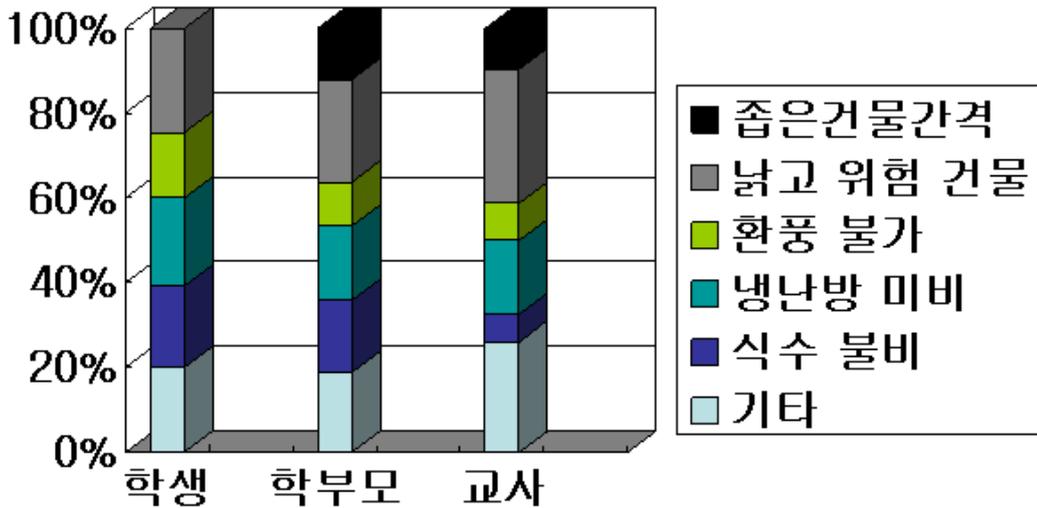
급식비 미납자 확인용 바코드 실태 조사 결과로 59.4%의 응답자가 바코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바코드 검사 결과 급식불가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가 12.9%, 메시지는 표시되지 않지만 바코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6.1%였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 급식이 학교가 직영하는 급식의 경우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바코드 검사에 대해서 응답자의 59.4%는 인권 침해라고 응답했고 14.8%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급식비 지원 대상자들을 급식 도우미로 활용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23%로 나타났다.

학생, 학부모, 교사 전체의 23.7%가 시설이 낡고 위험하다는 문제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그 다음이 18.2%로 냉난방 문제를, 15.9%가 식수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학교 시설이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중학생들의 불만도가 가장 높았다. 학부모와 교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학부모들은 학교의 내부를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교사의 경우는 학교 시설이 학생의 생활공간과

교사의 생활공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집단별 학교 시설·건강권 문제 인식



교사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설이 위험하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학생의 경우는 식수에 대한 불만이 다른 집단들 보다 높았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의 불만이 가장 높고, 다음은 중소도시가 높으며, 농어촌 학생들이 가장 만족하고 있다. 학교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학교 종류별로 비교해 본 결과 특목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아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일종의 적신호를 보여준다.

- 부당한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학생들 -

이 밖에 학교 밖에서의 부업(아르바이트) 관련 인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전체의 14.1%의 청소년들만 최근 1년간 부업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청소년은 부업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고 학생들은 무려 40.2%가 부업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업고 학생들이 주방·서빙, 판매 등 육체노동에 주로 종사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따라서 요식업소, 그리고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 일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정작 청소년들은 일할 기회를 그리 쉽게 얻지 못하였다. 6.3%만이 일자리를 쉽게 얻었으며 55.7%가 일자리를 얻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

부업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인권 침해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던 학생들의 87.1%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속만으로 부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작업을 강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4.5%의 학생들이 약속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거나, 84.0%가 약속한 시간보다 일을 더 많이 시키거나 심야노동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노동시간 연장, 심야노

동 강요가 실업고생에게 집중되고 있어 실업고 학생에 대한 사회전반의 시각교정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 인권 침해 사례 발생 대응 양식으로 교사들은 상담창구를, 학생들은 상담창구와 정부의 감시·징계를 손꼽음 -

다음은 교사나 학교가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다.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응답은 학생, 학부모, 교사를 막론하고 매우 낮았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제도화 부분이다. 교사들은 상담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학생은 상담창구와 정부의 감시·징계가 42%로 동일하게 나왔다.

-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합리적 징계절차를 요구하는 학생과 이에 둔감한 교사 -

학교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한 결과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의식은 세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나머지 권리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청소년 인권의식이 높았고, 다음은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특히 폭력으로부터 보호, 합리적인 징계절차 등에 대한 권리 의식이 높았고 이는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들은 여기에 대해 대체로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두발, 복장,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 결정에의 참여, 자치활동의 자유, 정치적 소신의 표현, 서클 동아리 활동의 자유 같은 경우는 교사와 학생의 의식의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오히려 학부모들의 의식이 매우 낮았다. 교직원단체별 교사들의 청소년 인권의식을 조사한 결과다.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면 전교조 교사들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학생 자치, 정치, 서클 동아리 활동,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해 매우 높은 인권의식을 편중되게 가지고 있다. 정작 두발, 신체의 자유나 일할 권리 같은 경우는 그리 높은 인권의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학생 인권 증진을 과제에 대해서도 학생과 교사 의견 달라 -

학생 인권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2/3 정도가 학급당 인원수의 과다를 원인으로 꼽았지만 여기에 동의한 학부모는 48%, 학생은 35.2%다. 다음으로는 제도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다. 제도가 미흡하거나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교사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인권교육,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부족을 원인으로 꼽은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

학교 내 청소년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대책을 물어본 결과 교사들의 37.7%가 학급당 인원수 감축을 주장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제도마련, 학교 규칙의 자율적 제정을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았으며 이와 더불어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제기하였다.

교사들의 청소년 인권 수호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72.6%가 청소년의 인권을 매

우 잘 지켜주거나 잘 지켜준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학부모 역시 49.1%가 매우 잘 지켜주거나 잘 지켜준다고 응답하였다. 학생은 이보다 훨씬 낮아서 33.2%가 잘 지켜주거나 매우 잘 지켜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부모의 11.9%, 학생의 21.8%가 교사가 청소년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잘 지켜준다는 응답보다 훨씬 낮았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의 88.2%, 학부모의 96%, 교사의 93.7%가 필요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의 89.8%, 학부모의 96.7%, 그리고 교사의 95.8%가 필요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교사들의 매우 높은 찬성률이 두드러진다. 이는 교사들 역시 최근 자주 대두되는 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와 분명한 기준을 확인하고 싶어 함을 보여준다.

▣ 학교 방문 조사 및 간담회 결과

이상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은 3개교에 대한 방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대상 학교는 중학교 1개교, 인문계 1개교, 공업고 1개교로 3개교에서 실시되었으며, 각 학교의 생활지도부장 교사와 각 학년별로 한 명씩 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자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3명의 교사에 의해 12월 6~7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학교 현장 방문 조사 결과에서도, 학생들은 두발 관련 규칙, 복장 관련 규칙들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교사는 처벌을 하기 전에 충분히 통보했다고 응답했지만 학생들은 거의 통보받지 못했다는 학생들이 많아 대조적 반응을 보인 것도 같았다. 면접 조사에 응한 학생들은 교사의 처벌을 문제시하고, 징계시 징계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특히 폭력으로부터 보호, 합리적인 징계절차 등에 대한 권리 의식을 높게 나타냈던 설문 대상 학생들과의 반응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교사들은 여기에 대해 대체로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두발, 복장,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의식을 보인 설문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방문 면접시 대부분의 생활부장 교사들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즉 통계적으로 밝혀진 의미는 학교 현장 방문 조사에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대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교사들은 학급당 인원수 감축을 우선적으로 주장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제도나 장치의 제도마련, 학교 규칙의 자율적 제정을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았는데, 이는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내용과 같다. 학생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학생과 오랫동안 학생 인권운동을 펼쳐 온 인권운동가, 그리고 생활부장교사와 가졌던 간담회를 통해, 생활부장 교사는 대규모 학교에서의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인권운동을 하는 학생과 전문가는 학교 규칙의 자율 제정,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들은 학생인권을 둘러싼 학생들의 문제의식과 교사들의 문제의식이 다르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각기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주는 것이기도 하나, 이들 각 집단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설문 조사, 면접 조사, 간담회를 통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의 중·고등학교 규칙 내용 분석의 시사점

다음으로 외국 학교들의 학교생활규칙 내용 분석에 따른 결과들은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금지 형태의 통제중심의 학교 규칙 내용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외국 사례들의 분석에 따르면, 오랜 유교적 전통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중국, 대만은 물론, 학교를 획일적으로 운영해 온 일본의 경우, 학교 규칙에 상세한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구에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분석 대상국이었던 서구의 미국, 캐나다, 호주 역시 금지 조항들이 많다. 이러한 성격은 종립학교나 사립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도 그대로 나타나 설립법에 따라 커다란 차이없이 통제위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외국의 경우 학생들의 인권을 둘러싼 교사와 학생간의 대립이 우리에게 비해 적은 것은 금기 위주의 통제성격 띤 학교생활규칙 자체의 문제만이 아님을 시사한다. 오히려 우리나라 학교생활규칙들은 다른 나라의 학교들에 비해 상세하지 못하다. 바로 이것이 어느 선까지 허용되고, 규제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학생, 교사간 문제 소지로 등장할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찌보면 외국의 학교 규칙이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규정은 학생들의 올바른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상과 그릇된 행동을 자제하게 하기 위한 벌의 명백한 선으로 작용함으로써 교사와 학생간 마찰을 줄일 수 있게 한다.

분석 결과 밝혀진 외국 학교 규칙의 상세성은 규제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징계시 소명 절차에 대한 규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대만의 경우, 개관천선을 위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위한 예의범절교육에 대한 조항을 마련해 놓을 정도다.

학교생활규칙을 근간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지도시 생겨나는 문제점은 두발처럼 학생들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하는 것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할 수 밖에 없는 교사와의 간극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처벌과도 관련한다. 여러 종류의 처벌 가운데 특히 체벌이 문제이다. 아직까지는 교사의 체벌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는 교육적 방편으로 행하였다고 하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체벌의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들이 필요하나, 이것에 대한 규정 또한 상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체벌에 대한 상세화의 필요성은 체벌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다. 캐나다, 호주, 중국의 경우, 교사들은 체벌하지 않는다. 이는 구태여 체벌하지 않고도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학교생활규칙의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벌로서 학생들을 다스리려는 교사의 인식도 문제이지만, 학교생활규칙의 준수성에 대한 학생들의 실천의식도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학교생

활규칙이 필요한 것이며, 교사의 체벌이 필요없어도 다른 유형들의 처벌들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며, 학생들도 학교생활규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렸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게 되면 벌점제나 다른 처벌의 적용 대신 몇 대의 체벌로 대신하고, 학생 또한 다른 처벌 대신 한번 맞고 넘어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 연구 시사점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가 중·고등학생 인권 보호 및 함양을 위한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헌법 정신에 입각한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 학교생활규칙과 교사의 규제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침해하고 있었다. 물론 학교라고 하는 곳이 많은 학생들을 훈육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으며,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 학교생활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정신과 어긋나는 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학교생활규칙들의 내용과 또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복장 및 두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나타났다. 이는 기본권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만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들이다. 또 실제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야기하는 규칙들도 주로 이러한 신체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복장 및 두발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또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와 학생 사이에 소모적인 갈등과 충돌만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권재원, 2005)에 따르면 교육적 효과도 없음이 증명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규제가 또 다른 억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정부 차원에서 복장, 두발 규정의 표준이나 예시안을 제정해서 학교에 내려 보내는 것 역시 민주적인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칙이 제정되도록 하는 수준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민주적인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첫번째 시사점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 사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내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살리는 학교생활규칙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 수 만큼의 교육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학교의 교육 주체들, 특히 규칙을 부가하는 교사와 그 대상이 되는 학생들간의 공정한 협상과 합의의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정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보다 민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의 조사결과 나타난 일선 학교의 실태는 이 부분에서 심각한 모습을 드러냈

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일정부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규칙이 제·개정 되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는 직접적 관심의 주체인 학생보다 간접적 관심의 주체인 교사가 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 상황으로 정당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규칙을 학생에게 강압적으로 집행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더 큰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제·개정 절차가 충분히 민주적이며 납득가능하다면 학생들도 어느 정도의 규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생활규칙 및 이의 적용을 위한 교사의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강제 보다는 학교생활규칙의 제·개정 절차에 학생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대표와 교사 대표가 학교생활규칙을 제·개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제화가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결국 학생 자치회의 법제화를 통해서 해결 가능한 일이다. 현재 학생회는 법적 기구가 아니라 특별활동의 하나로 되어 있다. 즉 학생의 자치회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일부인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학생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되기 어렵다. 학생회의 법제화, 그리고 법제화된 학생회와 교사의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협의 절차는 학교내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학교는 학생회는 커녕 교사회마저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학교장의 권력이 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가 모두 법제화되고, 학교장이 이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할 때 비로소 학교생활규칙의 제·개정 절차의 민주화가 이룩될 것이다. 물론 이런 절차를 거쳐 제정된 규칙은 엄히 적용되어야 하며, 충분히 그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장승중학교는 1999년부터 학생과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가 함께 학교 규정을 만들고 있다. 이 학교는 「학생회가 중심이 된 용의·복장 자율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절차를 보면, 학생회장 입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요구 제기 → 전교 대의원회에서 논의 →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설문지 작성 → 설문조사 실시 → 설문지 수합 및 응답 내용 분석 → 설문 분석 결과 공개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학급회의 시간에 학교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 전교 대의원회에서 결의 모으기 → 대의원회 결과 공고 및 학교장의 선포 → 전교생의 실천(4월부터 10월 말까지 시범 운영) → 학급회의를 통한 실천 결과 평가(11월) → 2차 설문조사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에 결과 보고 및 심의 → 대의원회와 학급회의를 통한 실행 결의 모으기 : 안건 자료 제시 → 학교장과 학생회장의 선포로 이루어진다.

마산 합포고 또한 교사와 학생이 하나가 되어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생생활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범적 사례의 성공은 다른 학교들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학교생활규칙 제정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자율적으로 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켜가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자치활동의 강화는 학교생활규칙 자율 제정의 선행 과제로 볼 수 있다. 학교생활규정에 시안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한 고려가 없음은 물론이고, 학생회의 권한도 사실상 없다.

학생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고’(제36조),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제39조)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명확한 근거없이 학생회 구서원의 ‘정당활동’을 포함한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의 인권 또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학부모, 교사에 의해 이끌려 가는 교육보다는 스스로 형성해 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신들이 함께 생활해 가는 공간인 학교에서 지켜야할 것에 대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학급회의나 학생회 등 학생 자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자치 활동을 통해 자율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학생회 구성을 위한 임원 자격 제한 규정 폐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학생회의 예·결산권 확보, 회칙 제·개정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독일의 경우처럼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셋째, 교사와 학생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사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생회가 법제화 된다 할지라도 그 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문제를 확인하게 해주었다. 그것은 학생들 자신의 무지, 혹은 무관심이다. 거의 대부분의 설문 항목에서 학생들은 일관되게 ‘잘 모름’ 응답 비율이 교사 및 학부모에 비해 높았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생활규칙이나 기타 자신들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혹은 충분한 정보를 받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회의 법제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 참여하려는 학생들이 없는 학생회는 결국 간부들만의 학생회(cadre council)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이 일상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가해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규제, 교사가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맡도록 등 떠밀 수 있는 학교장의 전횡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질병도 일어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인권 문제도 침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인권 침해 상황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특히 학부모 대상의 인권 교육이 시급하다. 이 연구 결과에서 시중 드러나는 것은 교육 3주체의 박약한 인권의식이다. 학생의 경우, 인권의식의 평균은 높았으나 이는 두발, 복장 등 이른바 스타일에 관련되는 영역에 그칠 뿐, 학생 자치, 정치 등과 관련한 인권의식은 거의 무관심에 가까웠다. 즉 인권의식이 높다기 보다는 외모에 대한 관심의 반영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특히 학부모의 경우 교사만큼 정보를 갖고 있지도 못하면서 학생만큼 인권에 민감하지도 않다. 다행스러운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인권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이 연구의 결과 교사들은 또 다른 행정조치, 혹은 교육 외부기관에 의한 간섭 등에 대

해 전문직 집단으로서 강한 배타성과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인권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오히려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거나, 혹은 인권백서 등의 ‘참고자료’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또 보다 본격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여기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추후 이들을 학교내 인권 전도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교사들 중 청소년 인권에 대해 민감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까지 한꺼번에 인권교육의 대상으로 만들기 보다는 이들을 적절히 지원함으로써 인권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들을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또 실제 교육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서 강사가 교사일 경우와 아닐 경우 교사들의 태도나 적극성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육과 인권의 가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철학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직원단체, 인권단체, 그리고 교육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설적인 청소년인권협의체가 필요하다. 여타의 전문 영역과 마찬가지로 교육 역시 고도로 체계화된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떤 보편적 가치가 여기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육적 변용을 거쳐야 하며 이 변용은 특정 가치의 승리나 포괄이 아닌,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실 그 동안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문제는 번번이 교육과 훈육상의 필요와 보편적인 기본권이라는 가치의 충돌로 평행선을 달리곤 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철학적인 연구 혹은 논쟁은 충분하지 않았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활동을 마구 재단할 수 없듯이, 교육적 필요라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할 수도 없다. 여기에는 어떤 합의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합의가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토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교육, 또 청소년의 인권, 이 둘은 모두 산발적으로 혹은 즉흥적으로 다룰 만큼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 중·고등학생 인권 관련 정책들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이러한 시사점들에 기반하여, 현재 각종 정당이나 단체에서 제출한 정책안에 대해 평가해 보고, 몇 가지 가설적인 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생 인권 지침 및 이에 근거한 학교생활규정예시안 마련에 관한 것이다. 학생인권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위법 차원에서의 방향을 제시할 뿐, 학교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까지 담을 수는 없다고 보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장되어야 할 학생 인권 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행동 지침이 되는 학교생활규칙 상의 내용이 잘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

교생활규칙 상의 기준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며, 이를 어겼을시의 처벌 규정 및 이에 대한 소명 절차 등을 상세화한 예시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생활규정예시안을 마련한 적 있었으나, 이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긴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교사, 학생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학생 인권의 보장을 위해 없애야 할 조항과 새로 신설해야 할 조항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규칙이 단위 학교 차원에서 원활히 개정될 수 있도록 새로운 예시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한다.

물론 새로운 예시안의 마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과 교사 간의 생각이 다르므로 인해 생겨나는 마찰을 없애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율적, 민주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학생들의 인권에 관한 것을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하는 학교생활규칙예시안에 의존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의 인권확보가 문제될 수 있다.

둘째, 교육청 차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안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부터 생활지도 방향을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중시」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두발 규제로 인한 강제 이발, 체벌 등의 인권 침해 사항이 지속되는 것은 이러한 지침이 단위 학교 차원에서의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시하기도 한다. 단위 학교 차원에서 학생 인권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학생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정 조치를 편다. 또 학생들의 민원시, 빠른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처리 지침을 정비하고, 담당 장학사에게 민원 처리 원칙 및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교육청 단위로 학생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담당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안들은 단위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존하는 것으로, 앞서 시사점 부분에서 지적했듯이, 민주적 방향으로의 교육 발전에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학생 인권과 관련해 관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학생 인권을 잘 실현하는 모범적 학교사례들을 발굴, 이런 학교들에 대한 시상, 다른 학교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 그리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별로 인권 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들의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과 같은 안들은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학생인권신고센터(가칭) 설립에 관한 문제이다. 중·고등학생의 인권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한 결과,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전히 학생들에게는 두발 규정, 용의복장 규정 문제점, 학칙 개정과정 급식 등이 문제시되고 있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학생들은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다. “이런 것

바꿔주세요”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불순한 학생으로 낙인 찍혀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징계 운운하며 그런 활동은 하지 말라고 하고 “왜 학교에 그렇게 불만이 많고 비판적이냐”고 훈계하는 것이 일반적 학교의 모습이다.

이처럼 학교 안에서의 일에 대해 침묵하기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실명으로 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게다가 민원을 제기해도 시정은 커녕 회신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불만 및 민원을 마음놓고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러한 방안으로 학생인권신고센터(가칭)를 설립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학생인권신고센터는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민간단체의 위탁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신고센터’처럼 구체적인 제시안은 이에 대한 상세안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학생 인권 보장 및 신장을 위한 법 체제 마련 및 정비에 관한 건이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보장의 첫 출발은 법적 보장에서 비롯된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제28조는 당사국이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선언적 수준에 그칠 뿐 학생 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여 2005년 이후부터 몇몇 국회의원들은 교육기본법의 하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최순영의원은 2005년 12월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이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교육당국 또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학생회의 법제화 및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금지, 인권실태 조사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정 법률안을 만들었다.

가. 학칙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그리고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학생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나. 학교에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두고,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개정).

다. 학생 징계시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소명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개정).

라. 체벌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마. 학생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업시간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추가학습이나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행위, 학생 두발·복장·개인소지품·일기를 검사하는 행위, 가정환경·성적·외모·성별·국적·종교·장애·신념·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행위 등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사. 교육공무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개정).

2005년 12월 23일 구노회 의원외 13명의 국회의원은 먼저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회부하였다. 제안이유는 자치조직인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활동이 학생들의 자주적인 능력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토론과 참여의 문화를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학교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나, 현행 법령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고 학생회를 명문화함으로써 학생자치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정이나 학생회와 관련한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학생회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교내·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줄임과 동시에 학생 스스로 존엄한 인간의 권리를 지키고, 참여와 자치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책임지는 생활태도를 익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학생의 자치조직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자치활동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 및 건의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이다. 둘째, 학교에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그 자치조직으로서 학생회를 두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생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제17조의 2의 신설이다.

2006년 2월 14일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생회, 두발규제, 체벌 등에서 인권침해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청소년들이 학생인권법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제기하며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학생인권법의 법제화를 주창하였다. 현재 관련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서의 자치활동 보장은 모호하고 부족하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학생회 활동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으며 학교장에게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이 전권 위임되어 있는 현실이다. 학생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과 같은 교육관료들이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자치활동을 제대로 지원할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6년 3월 8일 국회 기자실에서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두발규제를 비롯한 생활규정상의 인권침해 금지, 학생회 법제화 및 학생위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보장, 0교시금지, 강제적 자율보충수업 금지, 체벌금지, 각종 차별금지,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 교육실시, 학생들의 학교 운영 보장 등 학생인권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학생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인권법의 국회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학생인권법에는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를 조사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의 실행으로 차후 이루어질 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으면 한다.

【 토론 1 】

2006년도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결과 논의

고 전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 연구 목적 및 방법 측면

이 연구는 학생들의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학교생활의 인권 침해적 행태들을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학생들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는바, 현황 진단을 기초로 다각적인 방향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연구 목적을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학생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분석을 통하여 인권당사자 및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제안이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교육 당사자들의 낮은 인권의식 수준과 당사자 간의 인권문제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여 인권증진 방안 모색에서 근본적인 방향(인권교육 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고 봅니다.

또한 외국의 사례검토를 통하여 금기 위주의 통제성격 띤 학교생활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학교생활규칙들이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에 대응할 만큼 상대적으로 볼 때 구체적이지 못한 문제점도 잘 지적하여 의미있는 시사점을 주었다고 봅니다.

■ 내용과 관련한 제언

□ ‘중·고등학생 인권’의 법률적 검토 부분

이 연구는 일반적인 청소년 인권이나 아동의 인권이 아닌 학생신분의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라는 점에서 학교생활 및 이와 관련된 인권문제가 주된 연구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의 교육법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인 바, 교육기본법상의 학습자 규정을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대표적인 규정이 교육기본법 12조인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제1항).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부분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간략이 이 조항을 소개하고, 선언적 수준에 그칠 뿐 학생 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법이 교육기본법이라는 점에서 교육당사자의 일원이 학습자에 관한 항목의 첫 번째 조항으로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및 보호를 선언한 입법정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에 구체적 내용을 담지 못한 것은 입법 기술상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다만 입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이나 조문에서 기술되었듯이 구체적 ‘강구책’

이 미흡하였다고는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법 정신의 취지에서 본다면, 학생 인권문제의 검토 영역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과정상의 부분이라고 하겠고, 제2항의 연계 취지를 감안할 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을 포함한 교육과정 전반의 인권보장 실태가 연구대상이 되는 것도 의미있는 분석이라 생각합니다. 주지하다 싶이, 교육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이나,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 역시 학습기피와 연관되고, 이것이 과잉되거나 강제되었을 경우 인권보장은 멀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 인권 침해 내용 분석 부분

이 보고서는 중·고등학생 인권 제한 및 침해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살펴본 후, 학교생활규칙 및 개정 내용,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설계상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학생 인권의 관련 영역 및 관계자 중심으로 재구조화 하였다면 사안별로 대안 및 정책방안을 논의하는데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즉, 학교 교육과정 중에서도, 교과지도와 관련한 사항, 생활지도상의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겠고, 교사와 학생간, 학생과 학생간의 인권문제 측면, 나아가 가정교육과 관련한 가정에 있어서 인권문제나, 사회환경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 등을 유형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규칙의 검토에 있어서 생활규정의 제정 절차, 규정내용, 운영실제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생활규칙상의 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잘 적시하고, 열린우리당 소속 구분회 의원의 분석 결과(2005년 국정감사 이후 2006년 학교생활규칙을 개정했다고 보고한 학교 중에서 156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해 각 학교에서 개정한 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고안과 연구진의 기획 및 수집에 의한 및 전국적인 생활내규 실태 조사가 이루어 졌더라면 좀 더 구체적인 생활규칙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 외국의 사례분석 부분

외국의 사례를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잘 분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시사점에 대한 절을 두어 정리가 필요한 듯합니다. 생활규정의 제정절차 상의 특징, 내용상의 특징, 각국에서 학생 인권과 관련한 쟁점 등을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의견조사 부분

설문조사에 이어 현장 방문 조사를 하는 등, 학생 인권 상황의 실체적 접근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면담 조사결과를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논의하거나 항목을 좀 더 유목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사료됩니다.

□ 학생 인권연구 참고문헌 부분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1999년에 학교교육법규 및 학교생활규정을 중심으로 연구한 아래의 교육개발원 보고서 및 학술지가 있는바 참고하기 바랍니다. 특히 학생인권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생활지도규정의 전국 수준의 수집 자료 분석 부분은 본 연구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혜숙·김정래·고전(1999)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고전(1999). “학교법규상 기본적인 인권 보장제도와 과제” 교육법학연구(제11호). 대한교육법학회

▣ 학생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

보고서에 제시된 시사점 및 제언과 관련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칙이 제정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진술부분입니다.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시 한계(본질성 이론)’로서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학교규칙에 의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는 논의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국가 및 행정적 규제 및 제한을 강조하면서도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강조한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서 적극 동의합니다.

“둘째, 민주적인 학교 규칙 제·개정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대표와 교사 대표가 학교 규칙을 제·개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제화가 효과적일 것이다.”는 진술부분입니다.

→ 협의체 방안도 의미있는 방안이라 사료되지만, 현재 학내 다원적 의사수렴 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학생 대표 참여 및 학생 의견조사 결과 반영 제도화 등)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교사와 학생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 이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는 학생회 및 교사회의 법제화(필수기구화와 특정 권한 및 역할 분담) 문제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연구진의 대안의 제시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넷째,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특히 학부모 대상의 인권 교육이 시급하다.”는 진술부분입니다.

→ 연구진이 의견조사 및 면접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결론 및 제언을 하고 있어, 현실에 근거한 제언이라고 판단되나, 현재의 교육과정상의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언급이 다소 아쉽고 현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방안(재량활동 등) 등에 대한 제언도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 기타 제언

현재 학생 인권에 관한 문제가 자주거론 되고 있는데, 인권에 대한 논의시 차별, 두발, 일기

지도 등 교사의 교육행위와 관련된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학교현장이 늘 인권침해의 개연성을 내포한 곳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의 필요성, 두발 및 복장 지도의 교육적 효용성에 대한 논의도 균형있게 다루어져야하고, 인권교육의 대상에 있어서도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그리고 사회교육 차원의 대안도 함께 모색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최근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추가된 학습자의 윤리와 교원의 윤리 확립 정신은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인권문제와 연계되어 논의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 토론 2 】

타는 목마름으로!

김 석 언 (교육부 학교폭력대책팀 교육연구사)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아동, 학생의 인권 문제가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며 느끼고 고민하는 바를 함께 나누고자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결과 발표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제 발표로부터 학생인권에 대한 실태와 현안 과제 등을 보다 객관적 시각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권 상황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앞서 바탕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권 문제를 논하면서 때때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접하게 됩니다.

▣ 상황 1 :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 부모(교사) : 너는 왜 이 모양이나?
- 자녀(학생) : 도대체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 있나요?
- 부모(교사) : 니가 똑바로 하면 왜 안 해 주겠니!

▣ 상황 2 : 어른과 아이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걸하지 못하는가?

-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밝은 곳을 향하여 베란다쪽으로 움직입니다.
- 아이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은 어머니는 베란다쪽으로 기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놀라 소리치면서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와 함께 아이의 몸은 공중으로 들려 올려집니다.
- 어머니는 벌떡이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 아이는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 상황 3 : 우리들의 생활은 언제, 어디서나 같은 모습일까?

- 벽지 지역에 한 학년이 1개 반씩, 전교생이 50명도 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합해서 2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 대도시 지역에 한 학년이 10개 반씩, 전교생이 1,000명이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동네 주민은 만여 명이 넘습니다.

■ 상황 4 : 우선 순위?

- 어머니는 큰아이에게 어린 동생을 돌보고 있을 것을 부탁하고 잠깐 옆집을 방문하기 위해 나섭니다.
- 친구가 찾아와 넷가로 함께 놀러갈 것을 청하자 그 아이는 어린 동생을 방안에 들여놓고 장난감을 쥐어주고는 친구와 함께 집을 나섭니다.
- 혼자 남게 된 어린 동생은 이내 울음을 터트리며 방문을 열고 뒷마루를 내딛는 순간 마당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 이내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마당에 쓰러져 울고 있는 어린 아이를 본 순간 '이 녀석 동생 돌보라고 했더니 어디로 간거야! 들어오기만 해봐라'

광복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도 '인권'이라는 이름은 '타는 목마름으로...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였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인권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남몰래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권 문제는 모든 사회 계층, 모든 사회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혁명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혁명적일지라도 생활의 변화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과정과 단계를 필요로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모든 권리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의 이행으로부터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와 의무는 손바닥과 손등과 같아 서로 분리하여 논의될 수 없습니다.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은 교사와 학부모의 인권과 분리하여 논의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 내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의 인권'은 '학생인권+교사인권+학부모인권'입니다.

그동안의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실질적 민주화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합니다. 민주화와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습니다. 정부는 실질적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원리로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통

칭하는 데,

참여란 무엇입니까? 대화입니다.

무엇을 위한 대화입니까? 타협입니다.

무엇을 위한 타협입니까? 더불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전제 조건은 원칙과 신뢰입니다. 원칙을 세우고 지키며 상호 신뢰가 형성될 때 대화와 타협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민주화의 과제를 여는 열쇠일 것입니다.

또한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국가가 단번에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80년대 초 정부는 두발자유화, 복장자유화를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의 재연을 바라는 것일까요?

학생인권이라는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은 학교 사회에 원칙이 서고 학교구성원간 신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대화하고 타협하는 과정은 투쟁의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활의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더불어 만족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오늘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며 타는 목마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실태를 보며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의 물꼬를 터 주어야 할 역할이 분명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실마리를 찾아 풀어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 결과를 보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를 찾기보다는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씩, 한걸음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주신다면 고민의 시간이 더욱 짧아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 토론 3 】

학생인권, 논의에서 실제적 보장으로

배 경 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들어가며

- 인권의식의 성장과 청소년인권운동의 도약으로 기존의 학교 구조와 문화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어린이·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교육과정에서도 상대적 약자인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닌 폭력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인권 없는 교육이 기초적 정당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교육과 인권 혹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할 것이라는 전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인권이라는 디딤돌 위에 교육을 새롭게 건설해야 함.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가장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학교규율은 어린이·청소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전제 위에서만 정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또한 지난 2006년 10월 코피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이 공식 발표한 『유엔 아동폭력 보고서』 역시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보살핌을 받아야 할 가정, 학교 등지에서 관습이나 전통, 혹은 훈육의 이름으로 위장된 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을 비판한 바 있음. 우리의 교육기본법 12조 역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존중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선언적 수준의 규정에 불과해 우리 학교현장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음. 이제는 구례의 관습을 벗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때임.

1. 중고등학생 인권실태조사의 의미

- 중고등학생의 인권 실태 조사는 그동안 다양한 민간단체와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져 왔음. 뒤늦게나마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인권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학생인권 신장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할 교육부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인권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확인한 만큼, 이번 조사 결과는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임. 특히 이번 조사를 커다란 전환점으로 삼아 조사와 논의만이 되풀이되어온 과거를 극복하고 실제적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실천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 현재 학교규율은 학생들에게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음. 불필요하고 강압적인 규율의 존재,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규율의 집행, 학생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힘든 열악한 학교환경, 관련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사이의 인식 격차 등은 인권이라는 기반 위에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교육이 전개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도 재확인되었음.

- 특히 결론부분에서 1)학생에게도 헌법적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고, 2)민주적인 학교생활규칙의 제·개정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학생자치권을 신장해야 하며, 3)예방적 차원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점은 매우 설득력있는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음.

2. 중고등학생 인권실태조사의 한계

- 이번 연구가 학생인권 실태를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기존에 제시돼 왔던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은 매우 아쉬움. 특히 교사와 학생 사이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교육과 인권의 가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철학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명료성이 부족해 학생인권 현실에 의미있는 과장을 그리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됨. 교사와 학생 사이의 소통이 수평적,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수직적, 권위주의적인 학교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주장은 실효성 없는 선언에 불과할 것임. 또 교육과 인권의 가치가 과연 충돌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 없이 충돌을 없애기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칫하면 인권에 양보를 강요하는 것일 수도 있음.

- 또한 연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현재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학교생활규칙의 문제점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 학생인권이 제한·유보되도록 강제하고 있는 구조와 문화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 아르바이트 문제처럼 ‘학생’ 인권과 상대적 거리가 있는 문제(일하는 청소년의 문제는 학생·비학생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라는 의미)는 학생인권 실태 조사에서는 생략하는 편이 연구의 집중점을 유지하는 데 유효했을 것으로 판단됨. 급식 등 교육환경을 둘러싼 문제와 관련해서도 학생의 자유권, 교육권과 충돌하고 있는 학교생활규칙이나 학교 재량권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다른 연구의 과제도 돌려도 무방했을 것으로 보임.

- 연구의 제한점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외국 사례를 분석하면서도 그 나라 전체적인 학생인권 실태나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없이 개별 사례로 소개하는 수준에만 머무르다 보니 이 작업을 통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하였음. 우리에게 비해 외국 규칙이 상세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학생 인권을 신장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임. 예를 들어 교육당국이 체벌 관련 규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마련하여 제시

하였다고 해도 대다수 학교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 학생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이유는 규정이 상세하지 못하기 때문도 있지만, 주로는 그 규정이 지켜질 수 있는 현실적 힘이 없기 때문임. 1070년대 이루어진 미니스커트와 장발 단속을 후세대들이 어이 없어하는 이유는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그런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가의 오만 그 자체 때문임.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규칙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은 기본적 인권마저 함부로 제한하는 부당한 규칙과 자의적 폭력을 문제삼는 것이지, 부당한 규칙은 그대로 둔 채 그 규칙이 상세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

- 이 연구는 결론 부분에서 형식적 ‘절차’나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과도한 무게를 싣고 있다고 판단됨. 교육부의 관리·감독에 의존하기보다 학교단위에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님. 그러나 현실의 학교내 권력관계에 대한 분석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한다면 재량권, 교육권을 내세운 학교의 구조적 폭력을 해결할 수 없게 됨. 국가 차원의 기준 마련이나 교육부의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학교 단위의 자율성 = 학교장의 독단’에 불과한 현실, 학생의 의견을 형식적으로만 물어봤을 뿐 전혀 반영하지 않고서도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강변하는 현실,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존엄성을 저당잡힌 채 인권침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자체를 도외시하는 것임.

- 국가는 인권 보장의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고, 인권 보장을 위한 자신의 책무를 다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유엔은 국가의 책무로서 1)존중 2)보호 3)실현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국가는 학생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할 존중의 의무, 교사나 학교장 등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 나아가 학생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해야 할 실현의 의무를 함께 지니고 있음. 따라서 교육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이 현실화될 수 있게끔 지원, 관리, 감독하는 절차를 정비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임. 그동안 교육부가 이러한 역할을 방기해 왔던 점에 대한 역사적 반성이 있어야 할 시점에 교육의 민주성, 자율성이라는 형식적, 추상적 전제에 매달리는 것은 주창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약자를 배제하고 강자에게 편향적이었던 교육현실의 유지에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3.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추가적인 법·제도적 장치

1)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법제 정비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고 있듯이, ‘교육에 대한 권리’는 학생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학교생활에 대한 권리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생활을 학생인권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강화하고 교육당국과 학교의 인권 보장 의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됨.

2) 학생인권 가이드라인 제정과 그에 따른 교칙 예시안 공표

- 학생인권을 법률에 명시한다 하더라도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엄두에 두고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음. 특히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법률 위반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큰, 이른바 ‘회색영역’에 해당하는 인권문제들이 많음. 따라서 학생생활지도의 세부 내용까지 포괄하는 학생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학생생활규정과 징계규정, 학생회칙을 아우르는 교칙 예시안을 공표해야 함. 교육당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상호 협조 하에 국제인권기준과 청소년인권단체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참고하여 새롭고 종합적인 학생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야 함. 학생인권 가이드라인의 공표는 교육당국의 학생인권 보장 의지를 전사회적으로 천명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학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주체들 사이의 인식 차와 갈등 폭을 좁히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음. 공표된 교칙 예시안에 따라 각 학교가 교칙 개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장학지도를 실시해야 함.

3) 실효성있는 이행 방안 마련

-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내려 보낸 학생인권 관련 지침이나 교칙 예시안이 학교 현장에서 자리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지침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강제이발을 하지 말고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지도를 시행하라는 교육당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현장에서 강제이발과 폭력을 동반한 두발규제나 체벌이 사라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검토해 보아야 함. 교육당국의 지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학생인권과 관련한 학생 민원 처리 지침을 정비해야 함. 영국의 경우처럼 학교마다 학생인권 보장 수준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공표하여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한편, 그 체크 리스트에 따라 장학지도나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또한 학생들의 민원이 교육청에 접수되었을 경우, 학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신원을 보호하면서 시급한 시정 조치가 가능하게끔 민원 처리 지침을 정비하고 담당 장학사 연수에서도 학생인권과 민원 처리 원칙에 대한 교육이 심도깊게 이루어져야 함. 각 교육청마다 학생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장학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될 수 있음.

4)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

- 학생인권이 함부로 침해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학교가 사회적 감시망 속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데 있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외부에 알리는 경우에도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사건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학생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흔함.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실명으로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다 민원을 제기해도 시정조치는커녕 회신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앞으로는 학생들이 마음놓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되거나 학생들의 학내 시위가 일어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5) 정책 시행을 뒷받침하는 과제들

- 앞서 제안한 정책과제가 실제로 입안되고 수많은 교육주체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임. 교육주체들 사이의 인식의 격차를 좁히고 학생인권대책을 여유있게 수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일소하고 다른 학생지도 방식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함.

- 또한 학교별 학생인권 체크리스트, 교칙 예시안, 각 주체별 맞춤형 인권교육 교과과정, 학생인권 신고절차 마련 등의 정책 제안과 관련해서는 참고할 만한 사례들을 수집, 연구하여 구체적인 세부 시행안을 마련해야 함.

- 통제와 처벌 위주의 지도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나 학교규칙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역시 후속으로 연구되어야 함. 교육당사자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내는 연속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대안적 지도 방식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함.

- 나아가 새로운 학생생활지도 방식이 학교현장에서 뿌리내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구조와 교육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단지 개별교사가 지도방식만을 바꾸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학교가 당장 인권친화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교사들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교육 지원이 가능한 구조와 환경,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일례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포항 대동중 손규한 교사의 파면 사건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당국의 조치에 대해 교사들도 두려움없이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교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내놓지 않으면 안 됨.

【 토론 4 】

중 고등학생 인권 실태 상황 조사에 대하여

한 만 중 (전교조 정책실장 서리 남서울 중학교 교사)

1. 실태 조사의 의의

- 학생들의 삶을 “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인권 ” 을 현실의 인권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실태 조사서
- 학생 인권을 보편적인 기준에서 객관화하여 학생 인권 후진국의 실상을 정면에서 제기하는 의미

2. 학생 인권 실태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

-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 왕따, 학교 폭력, 비인간적인 학생 문화 등
- 부모(보호자)와 학생 관계: 학부모의 요구와 학생의 요구
-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 교사에 대한 욕설과 학생에 의한 교사 폭력 등의 극단적 상황이 확대되는 요인과 방안
- 교육 양극화가 초래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
- 입시 위주의 교육이 초래한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

3. 학생 인권 인식 제고의 필요성

-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설정이 왜곡되면서 교사 학생과의 교육적 관계가 파괴되면서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 자체가 힘들어진
- 세계 제 1의 자살률과 자녀 타살 사건 군대에서 발생하는 자살 사건 등 폭력과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적지 않게 형성되고 있음

4. 교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1) 학생 생활 규정 개정 활동
- 2) 학생 동아리 활동, 학교 신문,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제도화

3)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한 학생관 정립과 교육환경 개선 활동

▣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침(예시)

1. 학급 편성이나 자리 배정에 있어서 남녀와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 학급 편성시 반 번호 부여나 자리 배정에 있어서 키가 작은 학생들을 앞에 배치하고 여학생은 뒤에 편성하는 방식이 관행화 되어 있음. 이러한 신체적, 성별 조건에 따라 배치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열패감을 가질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 편성과 자리 배치에 대하여 학급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방식을 고려 해볼 필요가 있음

2. 학교 급식과 관련한 식당 이용 등, 학생 생활과 관련하여 학년간의 차이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학교에서 저학년 학생들은 선배 학년 학생들의 위세에 눌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음. 운동장 행사 후에 교실 복귀, 매점 이용, 식당 이용 등에서 이러한 관행이 축적되면서 학교생활이 과도한 위계에 의해 힘들게 느껴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대등한 원칙을 마련하거나 저학년 학생들을 배려하는 규칙 등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줄 필요가 있음

3. 교과서와 수업 과정에서 가정 편성에 따른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의 가족 구성은 한 부모, 재혼 가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교과서는 양부모 가정을 기준으로 하여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다른 가족 구성을 가진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가정에 대한 불만을 가질 여지가 높음. 가정 편성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교육과정 구성이 이루어져야 함

4. 학생회 구성, 동아리 활동, 학교 신문 및 교지 발간 등과 활동과 관련하여 활동공간과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편성 한다
 - 학생들을 학교 구성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는 것이 인권 교육의 가장 실천적인 형태이다. 최근 연극반 동아리 활동이 축소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 제기 등 오히려 학생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학생 활동에 대한 공간과 예산 지원 등을 제도화해주어야 한다.

5. 학급 활동과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학생을 인격체로 존중할 경우에 교사가 존대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비속어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어들 사용되어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침이 인권 교육 차원에

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6. 학생들은 학교 내외에서 교육활동 등과 관련한 사고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

-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이 학생들을 위한 일정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외 활동 중에 입은 상해 등에 있어서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사실상 보장하지 않음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장치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

7. 학생 복지와 관련한 시설과 예산, 기구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 성장기의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오거나, 오후에 허기가 지게 될 경우에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매점 등이 학교에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학교밖에 나가게 된다. 학교에서는 이를 규제하게 되면서 학생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매점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 등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학생 인권 신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학생부와 상담부 등 학생들을 통제와 관리 대상의 관점에서 편성한 학교 조직을 학생복지부 등으로 개편하여 학생 복지 관점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8. 화장실 용적 등 학교 시설에 있어서 여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문화시설 등에 있어서 여성을 위하여 화장실 용적과 변기 수를 늘리고 있는 점에 비하여 남녀 공학이 보편화 되었지만 학교 시설은 이에 따른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학생들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 할 때 여학생 휴게실, 생리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 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9. 학생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 시설과 교실 환경을 마련한다.

- 아토피 질환의 증가, 새 학교 증후군 등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학교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마음 놓고 마실 물, 녹지 환경의 조성, 교실 내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공기청정기와 청소기 보급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0. 학교 등교시간에 행해지는 교문지도 등 감독 중심의 생활지도 활동을 지양한다.

- 학생들은 이른 아침에 등교하면서부터 학생부와 선도 학생들에게 두발, 복장 등에 대한 지도를 받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통제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복장 지도 등 생활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능력을 신장시켜주고 규제 일변도의 지도 활동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 토론 5 】

『중 · 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결과 발표회 토론문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상담실장/ (현)부회장)

1. 들어가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밖에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다른 지위 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을 갖는다.” - ‘세계 인권선언’ 전문 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란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외국 선진국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의 역사만큼 상대적으로 우리의 인권의식은 낮다. 특히 어른들에 의해 교육받아야 할 존재라고 인식되어지고 있는 학생에 대한 인권은 통제당하고 있는 재소자나 군인보다도 더 침해 받고 있다. 독립된 성인이 아니고,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또는 교육받아야 할 존재이기에 더욱더 알게 모르게 인권이 침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발제문을 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의 인권의식에 대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안에서는 그 차이로 인한 갈등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학생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느끼는 반면, 교사들은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 상담실 “청소년 인권상담”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학내에서 아직도 이런 사례가 있을까 의아할 정도의 학생인권 침해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상담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호소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여러 정보수집 통로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두발문제, 체벌 등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고 있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학생을 통제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간담회를 통해 다양하게 연구 조사하였고, 외국의 중·고등학교 규칙 내용을 분석했다는 점과 특히 학생, 학부모, 교사와의 인권에 대한 인식차이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 본다.

2. 설문분석결과

학생생활규칙의 인지 및 공개 정도의 결과를 보면 ‘잘 알고 있다’보다 ‘잘 모른다.’는 응답이 월등히 적게 나왔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다’라는 응답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다. 학부모 상담실에 상담한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는 자신이 당면한 문제가 아니면 거의 학교생활규칙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2006년 하반기에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중 고 생활규정을 분석하기 위해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찾는 데도 쉽지 않았다. 공개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았고 몇 년 전 자료에서부터 일부만 공개되어 있거나 막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도 많았다. 학교에서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관련된 중요한 기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홍보하지도 않고, 거의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정도이다.

학생생활규칙의 재개정 절차 결과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집단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 학교 내에서의 재개정 절차를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할 시에 학생의 의견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형식에 불과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할 경우 참고만 할 뿐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체로서 빠져 있기에 학생들의 의견의 무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뀐 교칙의 만족도 면에서도 보면 교사는 의견수렴과정에서도 참여하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면에서도 만족도가 클지는 모르지만 반대로 학생들은 규칙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많고, 불만이 많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다고 본다.

학교생활규칙의 시행 정도와 처벌에서 학생은 다수가 ‘해당 규칙이 있으나 마나’하고 응답한 것을 보면 학생생활 규칙이 교육적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학생입장에서 지켜지지도 않고, 유명무실한 규칙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이는 학생이 교사를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처벌은 통계에서도 줄었지만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대로 처벌을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 역시 교사를 불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처벌 절차에서도 대상자 진술기회는 헌법에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리’중 ‘청문의 기회부여’로 충분한 소명의 기회와 불가피하게 징계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의 기회인 재심청구권이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 역시 이번 결과에서 보듯이 학생, 학부모와 교사 집단과의 응답에는 대칭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실제 학부모상담실에는 학생징계와 관련된 상담사례로 이 문제와 관련된 상담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기본권적 인권상황과 인권침해 대응, 인권의식, 학교 내 청소년 인권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견해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현재 집단간의 인식차이가 큰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 연구 결과물이 학교 내에서 학생의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자료로 잘 활용될 수 있겠다. 학생과 어른과의 커다란 인식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결국 학생인

권을 개선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3. 외국의 중. 고등학교 규칙 내용 분석의 시사점

외국의 학교 규칙 내용을 분석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같은 문화권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규칙은 우리처럼 통제 위주로 되어있고, 우리와 다른 서구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강조하기에 우리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규정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이었는데 커다란 차이 없이 통제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놀랐다.

하지만 세세한 것까지 규제하고 있지만 별 마찰이 없이 특히 체벌 없이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규칙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와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학생과, 교사가 서구에 비해 인성과 자질 면에서 뒤떨어진다는 것인가? 그 점은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보다 좀 더 오래전부터 인권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상대를 배려하는 인권의식과 논의과정의 민주적인 절차가 우리보다는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실제로 우리의 사례에서도 학생생활규칙이 학생들의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규칙은 오히려 더 잘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왜 어른들은 아직도 구시대의 인식에 갇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4. 맺으며

이 연구조사 결과에서 제시한 중. 고등학생 인권 보호 및 함양을 위한 정책과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며,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

다만 이 연구에서도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듯이 (가칭) 학생인권신고센터 설립에 관한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인권의식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다면 “112신고전화”처럼 본질은 왜곡된 채 집단간의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현재의 상황에서 학교 내에서 학생인권침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의견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필요 할 것이다. 기구만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부적격 교원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각 교육청별로 교직원무심의회가 가동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교육문화와 환경 속에서는 학생의 인권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 할 것이다. 입시위주의 경쟁체제 속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동체 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교육주체들의 참여로 작은 변화를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이다.

교육주체 모두가 원하는 인권교육의 강화하기 위해서 교사들만 인권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지금과 같은 수도권 과밀학급 속에서는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학교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제도 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운동진영에서 꾸준히 논의 되어온 학교자치, 교육 자치를 위한 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교장제도의 개선, 학교 교육력 향상, 교육 재정 확보,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학생인권법 제정 등,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인권의식이라는 것이 한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알고는 있어도 행하기 어렵다. 의식이 변화되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다.

아이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급 자치회를 통해 훈련되어 질 수 있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토론 주제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면 친구의 인권도 중요하고, 참여에서도 소외되는 친구 없이 배려하는 훈련도 한다. 학생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학생생활규정 재개정에는 반드시 학생의 의견수렴이 되어서 있으나 마나한 학교규정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 꼭 지켜야 할 규정으로 정착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인권선언문에도 있듯이 나이나 지위고하의 차이 없이 서로 존중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나이는 어리지만 학교에서는 학생을 인격체로 존중하며, 가정에서는 자식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로서 존중 한다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나이 어린 교사를 존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거나,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아이의 교육문제를 함께 상의하는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여 우위에 설려는 교사들도 학기 초 학부모와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 아이의 교육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혀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되면 교실에서의 아이의 인권은 상당부분 향상되어 질 것이다.

----- M E M O -----